

- 2·28 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운영 -

민 간 위 탁 (재 위 탁) 동 의 안

의 안 번호	5804
-----------	------

제출년월일 : 2020. 10.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제안이유

‘20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2·28 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12조 (민간위탁의 기준 및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제6조 (위탁사무 기준, 위탁사무 대상, 위탁사무 선정기준)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민간경영기법 도입과 전문성 확보로 운영의 효율성 증대
- 민간위탁으로 인한 시비부담 완화
- 2·28민주운동 정신 계승 및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민 대상 민주 시민교육 실시 등 지역민의 역사적 이해 및 자긍심 고취에 기여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2.28길 9(남산동)
- 개관일 : 2013. 2. 28
- 규모 : 부지면적 1,025㎡, 건축연면적 2,921㎡, 지하1층~지상4층
- 주요시설 : 2·28민주운동 전시실, 도서관, 문화강좌실, 세미나실, 사무실 등
- 운영현황

연 도	수탁기관	전시관 운영 (명)	도서관 운영 (명)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회/명)	예산지원 (천원)
2018	(사)2·28민주 운동기념 사업회	21,023	65,223	43 / 1,580	652,550
2019		26,076	90,356	176 / 3,305	667,850
※ 수입 : 보조금(시)					
※ 지출 : 인건비, 관리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 '13~'17년 대구시설공단 공공위탁					

○ 2020년 성과평가내역(평가기관 : 대구경북연구원)

- 종합평점 92.13점(가등급)

※ 등급부여기준

등 급	가	나	다	라	마
평 점	90점이상	89~80점	79~70점	69~60점	60점 미만

○ 위 치 도 : 대구광역시 중구 2.28길 9(남산동)



마. 민간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670백만원 정도(전년예산 및 2021 예산편성액 고려)

○ 인 건 비 : 300백만원

○ 일반운영비 : 180백만원

○ 자산취득비 : 90백만원

○ 사 업 비 : 100백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4조(위탁사무 기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위탁사무 대상)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환경 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체육·공원시설 등 시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 (위탁사무 선정기준) 시장은 제5조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 민간위탁추진계획

문서번호	- 문화예술정책과-13973	주무관	문화기획팀장	문화예술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행정부시장
등록일자	2020. 09. 10.					전결 2020. 9. 10.
결재일자	2020. 09. 10.	최기영	김종식	이상민	박희준	채홍호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문화예술정책과】

-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관리·운영 -

민 간 위 탁 (재위탁) 추 진 계 획

「2·28 민주운동기념회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2020. 12. 31)됨에 따라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을 통한 민주운동 정신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할 전문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현재 위탁기관 :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1 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2조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6조

2 추진 방향

- 민주화 운동의 효시인 2·28 민주화 운동의 정신 홍보 및 계승·발전을 선도하고 지역민 대상 민주 시민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민의 역사적 이해 제고 및 자긍심 고취
- 민주화운동 및 전시·문헌정보 분야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단체)에 관리운영 위탁 필요

3 위탁 개요

대상시설 현황

- 시설명 : 2·28민주운동기념회관
- 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2.28길 9(남산동)
- 규모 : 연면적 2,921.44m²(지하1층, 지상4층)
- 위탁시설 현황

(단위 : m²)

구분	면적	공간내역
계	2,921.44	
지하1층	668.54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보존서고, 창고, 주차장 등
지상1층	557.45	전시관, 기획전시실, 통신실 등
지상2층	565.15	대강당
지상3층	565.15	자료실, 유아열람실, 세미나실 등
지상4층	565.15	다목적실, 세미나실, 사무실, 문화강좌실, 방송실 등

위탁업무 : 2·28민주운동기념회관 시설물 관리·운영 전반

위탁기간 : '21. 1. 1. ~ '23. 12. 31.(3년)

위탁방법 : 공개모집(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결정)

위탁조건

-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구광역시 예산 범위 내 지원
-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 및 조례 준수
- 기타 사항은 위·수탁협약에 따라 관리·운영함

4 수탁기관 선정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20. 10월 중순(예정)
- 공고방법 : 대구시 공보 및 홈페이지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된 사무실을 둔 법인·단체

□ 선정방법

- 별도 계획수립(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심사·결정)
※ 1개 기관(단체) 접수시 재공고

□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사업수행의지,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정도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및 업무 관련성
-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및 사무인력 구성 등
- 2·28 민주화 운동의 정신 홍보 및 계승·발전하고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능력 등

□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구 성 : 6~9인 이내(위원장 포함)
 - 위 원 장 :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
 - 위 원 : 민주화운동 및 전시·문헌정보 분야 전문가 등
 - 위촉방법 : 공개모집(공고)

5 위탁비 산정(안)

□ 2021년 예산(안) : 670백만원 (전년예산 및 2021년 예산편성액 고려)

1. (단 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예산액	비 고
계		670	
운 영 비	인 건 비	300	급여, 수당, 퇴직금, 4대보험료 등 ※ 회장(비상근), 직원 9명
	일반운영비	180	수용비, 여비, 공공요금 등
	자산취득비	90	열람실 도서구입 전시관 장비교체 등
사 업 비	사 업 비	100	

※ 2021년 예산액은 편성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위수탁계약 주요 내용

□ 위탁범위

- 기념회관 시설전반 관리 및 운영
 - 전시관 및 도서관, 부대시설, 장비 등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기념회관의 안내, 홍보에 관한 사무
- 2·28민주운동 정신의 계승·발전 사무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운영

- “위탁자”는 대구광역시장, “수탁자”는 법인·단체가 됨
- “수탁자”는 사업계획과 예산운영계획을 “위탁자”가 요청하는 시기 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매 분기별로 위탁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함
- “수탁자”는 매분기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결과를 다음 분기 개시 후 15일 이내에 서면보고함

□ 지도점검

-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업시행에 관한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짐
- “수탁자”는 “위탁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시설물의 공간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물의 활용 목적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손해배상

- “수탁자”는 “위탁자”가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짐

7 추진일정

9월	추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사무 내용, 기간, 비용, 수탁자 선정방법 등
↓		
10월	시의회 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시의회 동의 * 10월 정례회(10.7 ~ 10.16 예정)
	일상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금 5억이상 감사관실 일상감사 의뢰
	공개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에 의한 공개 모집
↓		
11월	수탁기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일상감사 및 계약서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감사 의뢰 및 위탁계약서(안) 심사 의뢰
	계약체결 및 홈페이지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계약 체결 및 계약사항 공증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시 홈페이지 공개
↓		
12월	인수·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현황, 기구, 물품 목록, 생산문서 인수·인계
↓		
1월~	관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편람 작성 및 승인, 관리 운영